

##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6. 1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7. 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남평우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
- 아울러 조례 중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함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상소가 없을 경우는 원심으로 한다고 함(안 제4조)
- 포상금 지급액을 500,000원 이내로 함(안 제5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인상시키는 건 좋은데 소송을 유발시킨 공무원은 정계합니까?</li> <li>○ 고문번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합니까?</li> <li>○ 폐소할 경우 자체적으로 문책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소할 경우 문책을 받습니다.</li> <li>○ 사안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고문번호사가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체 건수의 55% 정도 수행합니다.</li> <li>○ 폐소할 경우 원인행위 공무원은 행정법 절차에 따라 감사실에 통보하며 구상권도 행사합니다.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승소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도 극히 미약하고 지급 건수도 적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함

나. 반대토론

- 타사·군에 비해 포상금이 높게 책정되면 시민에게 비취지는 모습도 안 좋을 것임.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월20만원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현행대로 동결시키고 소송담당 공무원은 판결시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패소율이 낮추어질 것임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30호
의결년월일	2000. 7. 6 (제79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
- 아울러 조례 중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함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상소가 없을 경우는 원심으로 한다로 함(안 제4조)
- 포상금 지급액을 500,000원 이내로 함(안 제5조)

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: 원소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상소가 없는 경우는 원심판결로 결정한다.

제5조제1항중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.

- 1. 행정소송(본안) 1건당 500,000원 이내
- 2. 민사소송(본안) 1건당 500,000원 이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자) ①(생략) 1. (생략) 2. <u>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: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%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</u> ②(생략)	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자) 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: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</u>  ②(현행과 같음)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(생략)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. ③(생략)	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. 다만, 상소없는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(생략) 1. 행정소송(본안) 1인당 100,000원 이내 2. 민사소송(본안) 1인당 100,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,000원 이내 3. 신청사건(행정, 민사소송) 1인당 20,000원 이내 ②(생략)	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(현행과 같음) 1. 행정소송(본안) 1건당 500,000원 이내 2. 민사소송(본안) 1건당 500,000원 이내  3. (삭제)  ②(현행과 같음)